

1. 포항가속기연구소규정 신구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 ② 소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2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 ③ ~ ④ (현행유지)	정관 제46조 제4항 개정사항 반영 : 교원보직 임면권 위임
⑤ 연구소에는 <u>소장 산하에 PLS-II운영 본부(부소장), 가속기운영부, 빔라인운영부, 산업기술융합센터, 행정 지원부를 두며</u> 각 부서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	⑤ 연구소에는 소장, 부소장 산하에 가속기연구단, 방사광연구단, 기획실, 행정지원부, 방사선안전팀을 두며 각 부서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	가속기연구소 조직 개편 반영
(별표1) 조직도	(별표1) 조직도	
	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	조직개편 승인일 적용